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02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박수영 · 이인선 · 김재섭
조지연 · 박충권 · 광규택
유상범 · 김승수 · 엄태영
유용원 · 최보윤 · 안철수
이종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

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7”을 “17,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각각 “1천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기한) 제9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근로자에 대한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 17,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 1천500만원-----

② -----

----- 1
천500만원-----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